

- 2026년 시민체육시설팀 -
조경 환경정비 공사
시방서

2026. 04.



군포도시공사
Gunpo Urban Corporation

제1장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 가. 본 환경정비공사 시방서는 군포도시공사 시민체육광장 내 조경환경 구역 정비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나.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다. 작업일정 협의는 체육행사 및 기타 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및 계획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일정과 시간 등을 정한다.
- 라. 본 작업은 수목전정(관목), 폐기물 반출 및 운반·처리를 포함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발주자” 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 당사자이며, 감독관(감독원)이라고도 한다.
- 나. “계약자” 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대상자이며, 수급인 또는 수급자라고도 한다.

3. 목 적

본 시방서는 체육공원 녹지대 풀, 잡초에 대하여 예·제초 및 관목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생육환경 개선, 병충해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과업개요

- 가. 공 사 명 : 시민체육시설팀 조경 환경정비 공사
- 나. 공사위치 : 시민체육광장(군포시 산본로 267)
- 다. 과업범위

구분	구분	수종	작업물량(m ²)	작업횟수	비고
1	기계예초	잡초	조경면적 적용 (9,142.96m ²)	3회	잡풀
2	인력제초	잡초	조경구역 적용	2회	취, 넝쿨 등
3	관목전정	관목		2회	철쭉, 개나리 등
4	교목전정	교목(관상목)		2회	고사목 포함

※ 아래 시민체육광장(기계예초, 인력제초, 관목전정, 교목전정) 조경구역 참조

- 라. 과업기간 : 5월 ~ 11월 추진, 과업은 3회 실시(1회 작업일수는 20일 이내)
- 마. 대금지급 : 각 회차 전체 공사완료 후 대금지급





불임] 시민체육광장 관목전정 조경구역





※ 본 공사는 체육광장 이용시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작업을 하여야 하며, 예초(제초)작업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공사를 추진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입찰 참가자격

- 가. 견적가격 제출 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사무소가 군포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한다.
- 나. 본 공사의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력 분야는 『조경식재공사』로 한다.
- 다. 조달청 나라장터 정보시스템(G2B) 이용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하여 무효인 견적가격 제출을 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적격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6.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지만,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사 및 작업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작업범위, 인원 투입계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충분히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견적제출 규정숙지

견적제출 참가자는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다.**

8. 과업내용

가. 예정공정표(※현장여건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공 종	공 사 기 간						비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작업준비							에초부산물 운반 포함
기계예초							
제초작업							
관목전정							

나. 과업범위

예초(제초)	수목 전지(고사목 정비 포함)
1. 예초(제초): 기계예초, 인력제초 ○ 기계, 인력제초 작업회수-2회 ○ 제1,2,3체육관 주변 화단 예초 ○ 인조잔디구장주변 소공원 화단 예초 ○ 운동장관람석 주변/뒷편 예초 ○ 1~3체육관 뒷편 고사풀 제거 ○ 매점 및 주차장 주변 예초 ○ 약수터 법면 예초 2. 칩, 넝쿨 등 제거 ○ 국기계양대 주변 경사면 칩, 넝쿨 등제거 ○ 주차장 급수대 옆 넝쿨제거 ○ 관람석 계단 넝쿨제거	1. 관목 전정(철쭉 및 개나리 등): ○ 웃자람 제거, 작업회수-2회 2. 교목 전정 ○ 작업회수-2회 ○ 관람석 뒤편 뒤편 전정 ○ 주차장 급수대 주변 전정 ○ 3체육관 뒤편 전정 ○ 기타 관상목(조경수) 등 웃자람 제거 및 수형관리 ○ 고사목 제거 4. 식물성 폐기물 처리 ○ 조경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전체 수거후 처리 -예초, 제초, 수목전지, 칩, 넝쿨 등 ○ 본부석 뒤편 식물성 폐기물 포함 -낙엽수거 포대 등

9. 감독자

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군포도시공사 직원을 말한다.

- 감독자의 직위 및 성명은 공사 담당자가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 도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10. 현장대리인

-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 시행 시 상주시켜야 한다.
- 2)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책임자로 현장대리인을 임명한 관련 구비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의 자격과 기능에 대한 일체의 심사권한을 보유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이들을 교체명령 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들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1. 제출서류

- 1) 작업 개시 전 관련서류를 발주자 또는 발주처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계 및 작업일정표/인원투입계획서 각 2부
 - 안전관리계획서
 - 기타 공사 및 계약과 관련된 서류

2) 각 회차별 공사가 완료된 후 도급자는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 공사완료 보고서 2부
- 공사완료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이 명기된다.
 - ① 공사개요, 공사진행 사항
 - ② 사용된 기계 및 자재에 관한 사항
 - ③ 사진철(공정(작업)별, 전, 후 비교사진)
 - ④ 감독자의 확인과 점검과 관련된 자료 포함
 - ⑤ 기타 필요서류

12. 하자보수 이행

- 가. 본 공사 준공 시 “도급자”는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적용하며, 도급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하자 보수에 성실히 임한다.

13. 공사시행

1) 도급자의 의무

- 도급자는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 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 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은 지고 공사계약 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도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 도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시까지는 공사 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 도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한다.
- 도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전문 기술자의 배치

-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법규의 준수

-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4) 조경전문인력에 대한 책임

- “도급자”는 조경전문인력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생건강, 안전관리, 작업규율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사”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항의 책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①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 ②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 ③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 ④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 ⑤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 ⑥ 근로자에 대한 복무점검 등 조경업무와 관련된 사항
 - ⑦ 기타 본 계약수행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5) 조경전문인력의 복장

“도급자”는 “공사”의 원내 작업시 전 조경전문인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야 하며 조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타인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

14. 시공기준

1)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시설물, 우·오수 배식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사전조사

-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15. 시공관리

1) 공사기간

각 회차별 작업일수는 **2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예초 3회, 제초 2회, 관목·교목전정 2회** 로써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현장대리인이 공사 기간 내 일일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할 때는 그전의 공사일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날 까지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작업시간

-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정관리

-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 도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5) 공사현장관리

-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 하여야 한다.
- 공사시공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 중에 위해를 끼칠 만한 시공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 중 도급자는 민원인과의 분쟁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고 특히 민원인과의 분쟁 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므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재료의 관리

-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 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8) 경미한 변경

현장 여건과 공사관계로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발주처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을 시행하며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계약변경조건

- 설계변경으로 공사 중단 지시를 한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를 수행치 못한 때
- 공법 등 계획이 변동될 때
- 기타 부득이 시공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16. 용어의 해석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해석차이가 있을 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른다.

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2) 안전조치

-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함.

-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7) 환경오염관리

-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공종별 시방서

1) 인력 및 동력제초 작업

- 제초작업이란 식재지에 번성하고 있는 잡초 및 덩굴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 제초제 살포는 일절 금하며 인력 제초를 원칙으로 한다.
- 인력 제초는 잔디·초본류 및 관목 등 수목에 손상치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신설된 잔디면의 뗏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초 포크 등을 사용해서 잡초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고, 신설된 잔디면이 손상되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수작업 및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 발생 초기에 시행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기 실시한다.
-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작업 당일 식재지역 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 관리중인 식물을 잡초로 오인하여 제거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특히, 관리중인 식물의 구근이나 포복경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도구 사용에 주의 하여야 한다.
- 화단내 잡초제거는 인력 및 예초기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야외유구 부근 내에서는 훼손방지에 주의하여 감독관리 하에 제초를 하도록 한다.
- 성곽길 구간 및 경사구간은 작업 시 헬멧 착용 및 낙상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성곽벽면 제초시 인력제초가 어려운 높이는 안전상 고가위를 이용한다.
- 보행로 등 마사포장 및 쇄석포장 제초는 현장상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선택하여 기계 및 기타도구를 이용하여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2) 잔디깎기 작업

- 잔디깎기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단, 들잔디는 앞의 길이가 0.03~0.06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한다.
-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의 잡물질을 제거한 후 실시한다.
- 잔디 및 풀깎기는 예취기, 로타리모어 등을 사용하며,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을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한다.
-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 준다.

-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실시하고, 깎은 잔디는 즉시 모아 반출 처리한다.
- 시민보행구간으로 판단되는 공간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오전 내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시 수시로 잔재정리에 만전을 기한다.
- 매번 작업할 때마다 잔디면이 불규칙하게 깎이고 잎의 갈변현상을 일으켜 균일성과 표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날을 수시로 정비하여 갈아준다.
- 가스관 주변, CCTV선 주변, 에어컨 배관 주변, 타 공사현장 주변 등 칼날 사용을 삼가고 줄날을 사용하여 작업한다.
- 보행로 및 차도에 접한 구역에 관목 및 초화류, 기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식재지 및 시설물 경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적정구역까지 예초한다.

3) 전정작업

· 교목류 전정

- ① 수목의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전정하며, 수목의 여건에 따라 전정의 강도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중대교목(R11~21미만, R21이상)의 근원부 도장지의 경우 작업량에 따라 작은 규격의 수목을 전정한 것으로 산정한다.
- ③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깥 가지를 잘라 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④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 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 ⑤ 정지 전정의 부산물을 즉시 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관목류 전정

수목 특성에 따라 다듬기, 속아내기 등을 실시한다.

· 생울타리전정

- ① 생울타리는 목적하는 높이와 폭을 유지하며 상단부와 양측면을 가지런히 잘라내고 불필요한 가지나 도장지 등을 정리한다.
- ② 높이 및 폭이 일정하고 반듯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4) 고사목 처리

- “도급자” 는 고사목이 발생할 시 감독관에게 미리 알리고 작업지시가 있을시 별채하고 주변 수목, 시설물 등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한다. 또 주위의 잔디 등은 필요에 따라서 시트를 덮는 등 보호처리를 행한다.

5) 작업결과 확인

매회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위치별 또는 구간별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완료계를 제출한다.

6) 작업이 미흡한 경우 처리방법

현장 확인결과 잡초가 존치되어 있거나 제초작업 시 잡초의 줄기부분을 제거하는 등 작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기타

- 제초작업은 감독관의 제초작업 지시가 있을 시는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잡초가 다량발생 시 작업효과를 감안 다수의 인력을 동시 투입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발생한 돌이나 이물질은 식재지 외부로 반출,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로 주변의 작업중 제초물, 예초물, 돌, 흙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 기타 조경유지관리에 안전을 기해 양질의 환경을 창출하고 미적 이미지와 기능을 개선하여 항상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반출 및 환경정리

- 잡초제거 후 발생한 예지물과 폐기물은 바로 수거하고, 즉시 화단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수거한 예지물 및 이물질은 작업당일 즉시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아서 반출할 경우에는 저장용기(PP마대 등)를 구비하여 외부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작업중 주변 환경을 철저히 수시로 점검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화단 내 배수로가 있는 경우는 배수로 청결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배수로에 이물질 및 잡초가 있는 경우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운동장 관람석 창고 옆 뒤편 쌓아 놓 포대(마대) 폐기물[낙엽 및 나뭇가지] 처리 포함